

## 【 2 】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8. 9. .

제 출 자 : 양 주 시 장

### □ 개정이유

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### □ 주요골자

- 가. 부위원장을 현행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1인으로 조정함  
(안 제2조제1항)
- 나.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서 누락된 국장급 공무원을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함  
(안 제2조제3항)
- 나.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안건의 제출시한을 종전에는 회의개최일 48시간 전까지로 하던 것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함(안 제4조제3항)

양주시 조례 제 호

##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시정조정위원회(이하 위원회 라 한다)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당연직위원은 각 국장·담당관·과장·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 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3호중 협의회 등(이하 심의회 라 한다)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를 협의회 등(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 등 이라 한다)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로 한다.

제3조(심의·결정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 다만, 이 조례에서 심의·결정(이하 결정이라 한다)이라 함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문·조언·권고·건의 등을 말한다.

제4조제3항중 48시간전에 를 5일전까지 로, 동조제4항중 회의개최 전일까지 를 회의개최 2일전까지 로, 동조제6항중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를 자문조언·권고·건의 등의로서 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제안설명 및 의견청취) ①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 을 기획팀장 으로,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직원 중 을 소속직원 중 으로, 소관 주무담당 을 소관 주무팀장 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중 15인이내 를 7인이내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 · 과소		기획감사담당관실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기획감사담당관 박 종 성
	팀 장 직위 · 성명	기획팀장 김유연(820-2051)
	담 당 자 성명 · 전화	실무자 송득한(820-2054)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·심의·연구·의결(이하 “결정”이라 한다)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<b>제2조(구성)</b>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안전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p> <p>③당연직위원은 각 담당관 및 과·소장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각 분야 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	<p><b>제2조(구성)</b> ①시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- - - - - - - - - - - - - - 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- - - - - 각 국장·담당관·과장·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- - - 위촉직위원 -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조(결정사항)</b>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</p>	<p><b>제3조(심의·결정사항)</b> - - - -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 다만, 이 조례에서 심의·결정(이하 결정 이라 한다)이라 함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에 대한 자문·조언·권고·건의 등을 말한다.</p>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1.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</p> <p>2.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단위의 위원회·심사위원회·심의회·추진위원회·협의회 등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</p> <p>3.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</p>	<p>1. ----- ---</p> <p>2. ----- ----- <u>협의회 등(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 등 이라 한다)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위원회 등이</u> -----</p> <p>3. -----</p>
<p><b>제4조(회의) ① ~ ② (생략)</b></p> <p>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일 <u>48시간전</u>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<u>회의개최 전일까지</u>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<u>자문·심의·연구·의결</u>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</p> <p>⑦ (생략)</p>	<p><b>제4조(회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③----- <u>5일전까지</u> -----</p> <p>④----- ----- <u>회의개최 2일전까지</u> ----- -----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 <u>자문·조언·권고·건의</u>등으로서 ----- -----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조(의견의 청취)</b>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p>	<p><b>제5조(제안설명 및 의견청취) ①</b>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②위원회는 안전심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p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간사와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</p> <p>②간사는 <u>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</u>이 되며 서기는 <u>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직원</u> 중 위원회 담당자가 된다. 다만, 위원회 안건 내용에 따라 <u>소관 주무담당</u>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.</p> <p>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</p>	<p>제6조(간사와 서기) ①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②- - - - - <u>기획팀장이</u></p> <p>- - - - - <u>소속직원 중에서</u>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 <u>소관 주무팀장</u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③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
<p>제7조(분과위원회)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<u>15인 이내</u>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7조(분과위원회) ① - - - - -</p> <p>- - - - - <u>7인 이내</u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②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

[현행조례]

##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

제정 2003. 10. 19 조례 제29호  
개정 2005. 5. 2 조례 제203호  
(행정기구설치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·심의·연구·의결(이하 “결정”이라 한다)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2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안전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<개정 2005. 5. 2>

③당연직위원은 각 담당관 및 과·소장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각 분야 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⑤위원장은 안전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외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.

**제3조(결정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

1.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
2.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단위의 위원회·심사위원회·심의회·추진위원회·협의회 등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
3.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

**제4조(회의)** ①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일 48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의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
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·심의·연구·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의견의 청취)**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6조(간사와 서기)**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직원중 위원회 담당자가 된다. 다만, 위원회 안전내용에 따라 소관주무담당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.

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7조(분과위원회)**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1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

회를 들 수 있다.

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8조(실비변상)**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 5. 2 조례 제203호 행정기구설치조례)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생략

양주시 조례 제 호(\* 개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반영 수정된 조례 전문)

##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시정조정위원회(이하 위원회 라 한다)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당연직위원은 각 국장·담당관·과장·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, 위촉직위원은 각 분야 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⑤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.

**제3조(심의·결정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 다만, 이 조례에서 심의·결정(이하 결정 이라 한다)이라 함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문·조언·권고·건의 등을 말한다.

1.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
2.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단위의 위원회·심사위원회·심의회·추진위원회·협의회 등(이하 이 호에서 "위원회 등"이라 한다)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
3.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

**제4조(회의)** ①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-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·조언·권고·건의 등으로서 효력을 가진다.
-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제안설명 및 의견청취)** ①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.  
②위원회는 안전심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6조(간사와 서기)**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  
②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 위원회 담당자가 된다. 다만, 위원회 안전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팀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.  
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7조(분과위원회)** 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 
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8조(실비변상)**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2008.9.4(목)의원간담회 개최결과 반영 -  
**개정조례안 수정사항**

○ 제1조(목적) 중 자문·심의·연구·의결 을 자문 으로 수정

○ 제3조(결정사항) 제목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

<개정안>

제3조(결정사항)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.

1. ~ 3. (생략)

<수정안>

제3조(심의·결정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 다만, 이 조례에서 심의·결정(이하 결정 이라 한다)이라 함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에 대한 자문·조언·권고·건의 등을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○ 제4조(회의) 제6항 중 자문·심의·연구·의결로서 를 자문·조언·권고·건의 등의로서 로 수정

○ 제6조(간사와 서기)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팀장 을 기획팀장으로,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직원 중 을 소속직원 중에서 로 수정

위 사항 이외에는 개정안(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)과 같음. 끝.